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드합○○○(본소) 이혼등
2014드합○○○○○(반소) 이혼
원고(반소피고) 안AA

피고(반소원고) 김BB

사 건 본 인 김CC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4. 1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가.항 기재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7:00까지
나. 장소 :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방법 :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리러 와서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 4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230,513,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9. 9. 18.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과거양육비로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29. 9. 18.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8.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혼인 전부터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2010. 5.경 일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공인중개사

합격이 늦어지면서 피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기간이 늘어났고, 비록 일정 기간 동안은 피고 모친이 피고의 용돈 등을 부담하여 주었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대로 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데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직업이 없는 피고가 가사와 육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길 원하였으나 피고가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데 대한 불만도 커졌다. 피고 역시 피고 모친이 사건본인의 육아를 맡아주는 상황에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집안일을 해주기를 원하였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집안일을 미룬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자정을 넘은 시각에 퇴근하는데 불만을 가졌다.

3) 원고는 구강이 돌출된데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3. 9.경 돌출입교정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턱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여 볼살이 심하게 빠져 고민하던 차에, 피고가 2013. 11.경부터 택배회사에 일하러 나간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란 생각에 필러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턱뼈에 금이 가는 등의 일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대신 화를 내거나 돈이 아깝다는 표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처를 받았다. 피고 역시 위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미용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에 머물면서 공과금 등을 연체시키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4) 원고는 2013. 11.경 104,000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모조품을 국제택배로 구매하였는데, 피고는 위 제품이 400만 원을 상회하는 정품인 것으로 알고, 도시가스요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원고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3. 12.경 바람을 쐬고 그동안 피고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치유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여야 하겠다며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피고는 가정형편 등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건본인도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원고는 미국 여행을 강행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2013. 9.에도 제주도 항공권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한데 이어 미국 여행까지 강행하며,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수술 및 시술을 받고 샤넬 가방까지 사는데 대하여,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6)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들에 이혼을 마음먹고 2014. 1. 2.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혼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집에 찾아온 피고 모친에게 피고를 말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모친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 모친이 이를 막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바닥에 넘어졌고, 원고는 피고 모친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14. 2. 28.경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고가 사실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한 사실과 재산분할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 모친이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논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 역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8) 원고는 2014. 4. 15.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2014. 4. 18.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이혼 등을 구하였으며, 피고도 2014. 5. 3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등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 6, 16, 20, 21, 40호증, 을 제1호증의 2, 5, 6, 제3호증의 4~6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피고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 인격 무시와 반말 및 피고 모친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가사 소홀과 가정경제를 무시한 성형수술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모친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그 경위와 상해의 정도, 단 한번 발생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지 못하고 의심만 키워 나가거나 일방적으로 회피해 버리는 등의 방식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원고는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가량의 소득(다만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연 2,000만 원 미만이다)을 얻고 있고,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당시에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다가 2010. 5.경부터 직장에서 퇴직한 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으나, 피고도 피고 모친으로부터 피고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대금 등을 지원받아 본인이 사용하는 돈은 스스로 지출하였고, 사건본인의 유치원비 일부 등도 부담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모친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대가로 월 120만 원을 피고 모친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 오빠가 분양받은 김해시 ○○동 ***** ***동 ****호를 피고 명의로 프리미엄 없이 1억 9,900만 원 상당에 양수하여 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대금 중 1억 2,000만 원 정도는 피고와 피고 모친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돈은 대출 등으로 마련한 후 혼인 기간 중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09. 5.경 그랜저승용차를 2,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부친이 그 매매대금 중 12,888,600원을 대신 부담하였다.

4) 피고는 2011. 3. 18. 분양가 4억 4,500만 원 상당의 부산 *구 ***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7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매수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은 2012. 7. 6. 위 *****아파트

를 매도한 대금 2억 7,250만 원, 피고 모친이 부담한 7,000만 원 및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모친은 이후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5) 피고 모친은 재혼을 앞두고 2011. 5. 11. 김해시 *** 면 *** 리 ****-* 전 681 m² 및 같은 리 ** 대 197m²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1.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0원

나) 피고의 순재산 : 400,625,000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400,625,000원

[제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4,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7, 제11, 13, 14, 17호증, 제18호증의 1~3, 제19호증, 제22~25호증, 제26호증의 1~12, 제27~31호증, 제32호증의 1, 2, 제34호증, 제35호증의 1, 2, 제36호증의 1, 2, 제37, 38호증, 제39호증의 1~4, 제42호증, 제43호증의 1~10, 을 제2호증의 1~4, 제3호증의 1~7, 제4~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매수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 또는 피고 모친이 지급

하였고 대출금도 피고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는 2010. 5.경 이후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생활비와 사건본인 양육비의 대부분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소득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 역시 원고가 생활비를 부담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특히 원고는 가사·육아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기간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 점, 피고는 혼인 당시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피고 모친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상당한 비율을 부담하였던 점,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피고가 피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재산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였던 점 등 혼인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억 2,000만 원

[계산식] 가)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text{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400,625,000\text{원} \times 30\% = 120,187,500\text{원}$$

나) 위 가)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20,187,500\text{원} - 0\text{원} = 120,187,500\text{원}$$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text{위 나)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 } 1\text{억 } 2,000\text{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와 반소 각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의사,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등 참작

나.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별거일인 2014. 4. 1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원고는 2010. 5.부터의 과거 양육비를 아울러 구하나, 2010. 5.부터 2014. 4. 15.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생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이미 재산분할과정에 반영이 되었으며, 원고도 가사조사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유치원비로 2013. 9. 300만 원, 2014. 3. 150만 원을 각 피고 모친으로부터 피고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위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원고와 피고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여러 사정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한편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

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와 반소 각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	----	-----

	판사	백소영
--	----	-----

	판사	조수진
--	----	-----